

입법평가 회의자료집 ③

「환경분야에 대한 입법평가 모델 정립 연구」 전문가회의

2010. 2. 17.

전문가회의 일정

목 적 : 2010년 입법평가연구센터 수시과제인 “환경분야에 한 입법평가모델 정립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사전적으로 연구추진의 방향, 절차, 방법, 내용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얻고자 함.

일 시 : 2010. 2. 17(수) 11:00 13:00

장 소 : 양재동 디오라마

참석자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최 윤 철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원외
허 성 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홍 준 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 상 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안 소 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조정팀장	
이 순 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원내
윤 광 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차 현 숙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 석 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 계 형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조 용 준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원외 5인, 원내 6인, 총 11인		

회의내용

- 배경 설명
 - “환경분야에 대한 입법평가 모델 정립 연구”의 배경 설명
 - “환경분야에 대한 입법평가 모델 정립 연구” 연구계획 설명
- 전문가 의견 교환 등
 - 연구의 추진방향
 - 연구의 절차 및 방법
 - 연구의 유의점 등
- 향후 전문가회의 개최 일정 조정 등.

전문가회의 일정

목 차

■	연구계획서안: 환경분야에 대한 입법평가 모델 정립 연구 -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 7
■	자료 1 : 2009년 토양환경보전법 입법예고 15
	<붙임 1>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주요내용 19
■	<붙임 2> 법령 개정방향 및 추진 체계도 27
■	자료 2 : 2008년 토양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정부안) 31
	자문회의 회의록 39

■ **수시연구과제명(2010년)**

환경분야에 대한 입법평가 모델 정립 연구
-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

■ **연구제안자**

입법평가연구센터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환경관련 법제는 대표적인 비시장가치인 환경가치에 기초하고 있음. 또한 환경 관련 법제들은 대부분 규제를 중심으로 담고 있으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법 목적이 국가에 의하여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이와 같이 비시장가치가 중심이 되는 분야인 환경관련 법제는 가치산정에 대한 경제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워 환경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공감에 비하여 평가가 소홀하였고 그에 대한 입법평가 모델이 정립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환경관련 법제의 비시장가치적 특징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모델 정립을 위하여 주요 환경관련 법률인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하여 각종 평가기준과 분석 방법을 모두 적용하여 평가함으로써 최소한 환경관련 법제로 대표되는 비시장가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제들에 대한 평가기준, 척도 및 평가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환경 분야에 대한 입법평가 모델 정립을 위하여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그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비시장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제에 대한 평가기준 및 척도를 제안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토양환경보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 제와 토양환경평가 -연구자(년도): 채영근(2008) -연구목적: 토양환경보전 법상 토양환경평가의 실 효성 확보	-문헌연구 -비교법 연구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소개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선 방안 제시 -오염부지 양수도와 토 양환경평가 관련 판례 분석
주요 선행 연구 2	-과제명: 토양환경보전법 책임체계의 새로운 방 향-브라운필드 문제 -연구자(년도): 김홍균(2009) -연구목적: 미국의 브라운 필드 문제를 둘러싼 경험 에서 토양환경보전법의 책 임관련 시사점 도출	-문헌연구 -비교법 연구	-미국의 브라운필드 문제 관련 법 소개 -토양환경보전법 책임체계 에의 시사점 도출
본 연구	-기존의 연구는 토양환경 보전법의 책임 부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 안이 주로 연구되었음 -본 연구는 다양한 입법 평가 방법론을 통하여 토양환경보전법에 e대 하여 분석 평가하여 최 적의 입법대안을 제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문헌연구 -법령체계분석 등 규범 분석 -비교법 연구 -보고 신고 관련 표준 비용모델 적용 분석 -비용편익/비용효과분석 -전문가조사 등 실태조사 -비시장가치계량화 관련 설문조사	-토양환경보전법의 체계성 확보 -비시장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 주요 연구내용

□

정성적 평가

- 합헌성을 포함하는 체계정합성 평가
- 법률의 명확성, 이해가능성
- 규범에 대한 수범자의 이해도 및 복종도 조사

□

- 비교법적 연구

계량적 평가

- 토양환경 조성 관련 조항 : 비용 편익/비용 효과분석
- 토양환경 관련 신고 보고 조항 : 표준비용모델 적용 분석
- 토양환경 오염 및 배상 관련 조항 : 조건부 가치평가법 등 환경가치추정 기법 적용 분석

□

전문가 조사 등 실태조사

□

- 토양정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 정립

□

- 토양정화기준의 합리화 등

■ 연구추진방법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최적의 입법대안 제시

□ 비시장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제에 대한 평가 모델 정립

□

□

문헌연구 및 실태조사 (2010.1-2010.6)

전문가회의(2010. 7)

워크숍개최(2010. 8)

■ 기대효과

- 토양환경관련 법률은 비시장가치의 대표격인 환경가치에 기초하고 있고 그 내용이 대부분 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조성이라는 목표가 국가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는 목표라고 여겨져 왔음. 따라서 현재까지 제시되어 오던 법률비용과 결과(효과) 분석에서 사용되어 오던 분석 도구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음. 즉 환경조성과 관련한 비용·편익 분석, 환경관련 규제에 대한 표준비용모델 적용, 환경오염 및 배상 등과 관련하여 조건부 가치평가법 등 환경가치 추정 기법의 적용 등 다양한 평가기준과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 봄으로써 최적의 입법대안을 제시함
- 비시장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제에 적용될 수 있는 평가기준 및 척도 등을 제시하여 환경분야 등 비시장가치에 적용가능한

■ 협동연구기관 및 연구진 구성
입법평가 모델을 정립함

: 환경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학계, 환경운동 연합 및 기타 유관기관 전문가와 공동연구 수행 예정.

기 관	인 원
환경부	1
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상운 박사, 안소은 박사)	2
학계(법학, 경제학, 환경공학 등), 허성욱 교수 최윤철 교수	3

기 관	인 원
환경운동연합 등 NGO	1
기타 유관기관 전문가	1
센터원	5
총계	13

■ 연구기간

□

2010.1.-2010.10 (10개월)

구 분	1월,2월	3월,4월	5월,6월	7월,8월	9월,10월
연구 수행 계획					
■ 정성적 평가 :					
1. 관련 법령의 체계성분석 및 검토					
2. 비교법적 연구					
3. 규범의 수용도, 효과성 평가					
■ 계량적 평가 :					
1. 비용편익/비용효과분석					

『환경분야에 대한 입법평가 모델 정립 연구』 전문가회의

구 분	1월,2월	3월,4월	5월,6월	7월,8월	9월,10월
2. 표준비용모델 적용 연구					
3. 조건부가치평가법 적용 연구					
4. 종합검토					
■ 환경분야에 대한 입법평가모델 제시					
○		○		○	
전문가 자문					
전문가 회의 및 워크숍					
기 타		○		○	
국외출장					
■ 연구예산					

■ 참고문헌

1. 김홍균, 환경법-문제 사례-, 홍문사, 2007
2. 김홍균, 토양환경보전법 책임체계의 새로운 방향:브라운필드 문제, 저스티스, 2009

3. 박용하, 토양오염 가능 부지의 환경성 평가, 토지와 기술(2002년 여름호), 2002
4. 박윤흔, 미국 환경법상의 토양오염의 정화책임, 미국헌법연구, 1996
5. 조홍식, 토양환경침해에 관한 법적 책임, 환경법연구, 1998
6. 채영근, 오염된 토양의 정화책임, 공법연구, 2002
7. 채영근, 토양환경보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와 토양환경평가, 공법학연구, 2008
8.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지구 토양환경 복원사업의 공공적 성과 사례, 2003
9. 김성균 이비안, 낙후산업지역 개발 관련 입법동향분석 및 대안의 모색, 환경법연구, 2008
10. 박종원, 미국의 브라운필드 문제와 그에 대한 법적 대응, 환경법연구, 2007
11. 황창식, 기업의 인수 합병과 토양오염, 환경문제연구 총서, 대한변호사협회, 2001

자료 1 : 2009년 토양환경보전법 입법예고

	보 도 자 료		보도시점	자료배포일	매수
			매		
	담당 부서	상하수도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	백운석과장/ 이영채 사무관 2110-6767 / 6772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민간업체의 토양관리 참여 확대 및 관리체계 개선

◇ - 토양환경평가기관, 위해성 평가기관을 분리 독립
 - 정화비용 분담을 위해 업체의 자발적인 조합 설립 운영

국가의 토양정화를 위한 역할 확대, 정화기준 합리화.

- 국가유발 또는 시급한 정화가 필요한 오염부지에 대해 국가가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 추진
 - 일정한 요건을 가진 오염부지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적용, 건강 안전을 담보하는 범위내에서 정화를 추진하여 사회비용 저감

환경부는 토양오염관리에 민간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가 토양오염 정화를 직접 추진하는 등 역할을 확대하며,

- 오염토양 정화에 소요되는 비용 분담 등을 업체가 자발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공제조합 설립을 허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가진 오염부지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적용하여 정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09.6.30일 입법예고하였다.
- (1)

이번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유발 또는 시급한 정화가 필요한 오염부지에 대해 국가가 정밀조사 및 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전문기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제24조부터 제36조)

- 현재는 국가가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를 추진하기 위한
- (2)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토양오염 정화를 위한 역할이 제한
토양오염 발생 시 **오염토양 정화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분담
및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계 자율적인 공제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10조의4)
- 현재는 토양오염발생시 개별업체에서 정밀조사 명령 및 정
화조치 명령 등을 통해 정화를 추진함에 따라 오염토양 정
화(3) 화에 소요되는 비용 확보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정화처리
지연 우려
공공 오염토양 등 **일정요건을 갖춘 오염부지에 대해 위해성
평가**에 따라 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향후 토지이용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보전은 담보**하되, **정화비용 등
은 줄일 수** 있도록 개선(안 제15조의5)
- 현재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부지에 대해 그 우
려기준 이내로 일률적으로 정화토록 규정
- 또한, 위해성 평가는 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원인자가 정화
※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 해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
청장이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화범위와 시기에
반영 가능
위해성 평가란 **환경중 오염물질이 인체에 위해를 끼친다면
(4) 어느 정도인지를 정량적으로 산정하여 치유수준을 도출하
는 과학적 방법론**으로서, 오염된 토양을 **다른 토지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복원목표수준을 설정**할 수 있어 선진국에서
도 널리 적용되고 있음
공공 오염토양의 적정 정화와 정화된 토양의 수요처를 고려
한 추가처리 등을 통해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가칭 “**오염토
양 정화 유통단지**” 조성 근거를 마련(안 제15조3제4항)

- 국가의 토양오염부지 정화대상 확대 및 책임강화에 대비하고 오염현장에서 외부로 반출처리되는 **오염토양의 적정관리와 처리된 토양의 재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

(5)

토양보전대책지역에 대한 대책계획 수립 시 대책지역 내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토양오염지역에 대한 오염개선 및 정화사업의 활성화 유도(안 제18조제2항)

- 현재는 대책지역 지정 시 토지이용 제한에 치중되고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근거가 없는 등 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실익이 없으므로 토양오염지역을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오염개선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없음

(6)

토양관련전문기관에서 “**토양환경평가기관**”과 “**위해성평가기관**”을 분리하여 전문화하고, 동 업무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등 **토양산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안 제23조의2)

- 현재는 특수법인, 대학 및 비영리법인만이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어 민간업체 참여가 제한되고 “토양환경평가기관”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구분되지 않아 전문성 확보 미흡

(7)

토양관련전문기관을 토양오염조사, 토양환경평가 및 위해성평가 등 분야별 역할을 구분,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민간 전문가 활용 가능

그 밖에, 공사 등의 과정에서 토양오염 발견 시 신고, 오염토양 정화 등에 대한 조치명령 체계 일원화 등 법령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체계와 법령 내용을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

□

환경부는 이번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토양오염에 대한 국가의 역할 제고, 정화처리 인프라 구축 등이 추진되면 토양오염 정화 및 정화된 오염토양의 활용 촉진과 민간의 토양산업 참여 확대 등으로 토양환경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고

- 위해성평가 적용확대를 통하여 인체 등의 위해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화수준 설정 및 적용으로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사회적 비용과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금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을 통해 관련기업,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금년 10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하여 금년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 입법예고 기간은 '09.6.30~7.21(22일간)이며,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환경부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붙임 : 1.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2. 주요 개정사항 추진체계도

<붙임 1>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적용범위 명확화 및 용어정의 추가 : 안 제2조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적용대상 범위를 구체화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장소에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운반 저장 등에 따른 장소뿐만 아니라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된 장소”도 포함
- 법 제2조에 제도에 대한 정의 추가
 - “토양정화검증”, “반출정화”에 대한 법적 용어의 정의 추가
 - 8. 토양정화검증 :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검증 행위
 - 9. 반출정화 : 오염된 토양을 적정하게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다른 장소로 반출하여 정화하는 것

2 국가의 오염토양 정화 등 추진 : 안 제5조의2, 제7조, 제24조내지 제36조

- 국가유발 또는 시급한 정화가 필요한 오염부지에 대한 국가의 정밀조사 및 정화처리 근거 마련
 - 이 법 시행이전에 국유재산의 사용에 따라 발생된 토양오염 (예,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등)과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가 큰 지역 등에 대해 환경부가 토양오염정밀조사 및 정화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오염토양 정밀조사 및 정화 대상지역, 시기 및 사업비 등에 대해 재산관리청 등과 사전 협의, 소요비용은 오염원인자에게 부과 가능
- 국가에 의한 오염토양 등의 조사 및 정화 추진을 위한 “토양오염관리단” 설립 추진
 - 토양오염관리단을 법인으로 설립, 국가(환경부)의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 등을 담당하도록 추진
- 국가에 의한 오염토양 정화부지의 사용 수용하는 근거규정 마련

3

표토보전 및 침식방지 대책 수립 : 안 제5조의3

-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표토의 유실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방지대책을 마련
 - 우선, 우리부에서 관리하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을 대상으로 조사 및 대책을 수립
 - 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주거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4

민간의 토양정화 재원마련을 공제조합 설립 : 안 제10조의4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 또는 토양정화업자가 오염토양 정화에 소요되는 비용 확보를 위한 공제조합 설립
 - 공제조합을 통해 납부한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정화기금을 조성, 토양오염 발생시 동 기금으로 토양오염 적기처리 유도

- 토양오염 발생 시 과도한 비용소요로 사업자의 부담 증가, 정화기시 지연 및 부도 발생시 오염토양 처리 불가 등 문제 사전예방

5

토양오염 신고대상 추가 : 안 제11조

- 건설공사 등의 과정에서 발견된 토양오염에 대해 신고토록 규정
 - 토양오염물질의 생산 운반 저장 취급 가공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출 누출 시 신고를 부여, 토양오염이 방지되는 결과 초래
 - 추가로 건설공사 등의 과정에서 발견된 오염토양에 대해 해당 부지의 소유 점유 사용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 오염토양 적정관리 유도

6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 등 조치명령 체계 일원화 : 안 제14조

- 법 제11조, 제14조 및 15조로 분산된 토양오염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 등의 조치명령 근거규정을 제14조로 일원화
 - 토양오염 신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오염검사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등으로 확인된 오염토양에 대한 조치명령 일원화로 혼란 방지
 - 토양오염정밀조사 등의 조치명령 대상을 추가(누출검사 불합격 시)

7

**정화유통단지를 통한 정화기반 확충 :
안 제15조의3제4항**

- 오염토양 반출정화, 준설토양 처리 및 정화토양의 유통을 통한 수요확대를 지원하는 “오염토양 정화 유통단지” 조성 추진
- ※ ○ “오염토양 정화 유통단지” 조성 목적과 조성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 법적 기반을 마련
오염된 준설토양을 오염토양 정화 유통단지에서 적정처리하도록 지원

8

**위해성평가를 오염토양 정화기준에 반영 :
안 제15조의5**

-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토양 범위를 확대
 - 정부의 오염토양 정화사업, 자연적 원인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 및 위해성평가에 의한 정화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부지 추가
- 위해성평가에 따라 정화하도록 정화기준에 반영
 - 위해성평가 결과를 정화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되, 평가 결과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위해성검증기관(국립환경과학원)의 검증 실시

9

**토양환경산업에 민간업체 참여 확대 :
안 제23조의2내지 제23조의6**

-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민간기업 참여 허용을 위한 규정 개정

-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위해성평가기관”과 “토양환경평가기관”을 추가하고,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과 “토양환경평가기관”에 대한 준수사항,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을 신설
 - ※ 토양관련전문기관 :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 위해성평가기관, 토양환경평가기관
 - 다만, 위해성평가 및 토양환경평가를 위한 시료채취 분석 업무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토양오염조사기관이 담당(기관별 업무 전문성 확보)
 - 위해성평가기관과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기준에 오염조사 분석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장비는 제외(시행령 개정 시 반영)
- 09년도 토양관련 규제개선 대상과제로 선정됨

10 토양보전대책지역의 피해주민 보상근거 마련 : 안 제18조

- 토양보전대책지역의 대책계획 수립 시 피해주민 보상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양보전대책지역에 대한 대책계획 내용에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대책을 포함하여 토양오염지역에 대한 오염개선 및 정화사업 활성화 유도
 -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방안이 미규정되어 대책지역 지정 시 토지이용제한에 치증되고 실익이 없어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정화된 사례가 없음

- 피해주민 보상대책의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규정

11 법령체계 정비

□□ 토양관련 업무 흐름에 맞도록 법령의 조문순서 조정

- 현행 법령 조문→순서를 총칙, 조사, 정화, 관리 등 구분하여 법령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개정

- 현행 : 제1장 총칙 제2장 토양오염의 규제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 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제4장 보칙 → 제5장 벌칙

- 개정 : 제1장 총칙 제2장 토양오염의 조사 제3장 오염토양의 정화 제4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5장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제6장 토양오염관리단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 각 장에서 규정하는 주요 내용

- 제1장 : 목적, 정의, 적용범위, 토양보전기본계획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 제2장 : 토양오염 조사, 신고, 토양환경평가 및 오염원인자, 토지의 사용 및 수용, 손실보상, 국가의 토양오염 조사 및 정화 등

- 제3장 :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명령, 검증, 이행완료 보고 및 위해성평가 등

- 제4장 :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대책기준, 대책계획 수립 등

- 제5장 : 토양관련 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의 지정, 관리 등

- 제6장 : 토양오염관리단의 설립 근거, 추진사업 및 지도 감독 등

- 제7장 : 대집행, 보고 및 검사, 관계기관 협조 등
- 제8장 : 벌칙 및 과태료 기준

12 | 기타, 현행 법령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

- 토양환경보전법을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
 - 법 문장을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바꾸는 “알기 쉬운 법령” 으로 정비

- 토지 양도 양수 과정에서 토양환경평가를 통해 토양오염우려기 준 미만인 것이 입증된 경우 오염원인자에서 제외(안 제10조의3 제3항)
 - 토양환경평가를 통해 오염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양수자는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로 보아 오염원인자에서 제외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의제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 ※ ○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변경으로 사업장 정보(사업장명,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의제
 - 행정안전부의 시 군 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

- 오염토양을 정화한 토양의 방치 또는 투기행위 금지(안 제15조의4)
 - 오염토양을 정화하더라도 사용지역의 오염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사용이 불가한 바, 오염토양의 투기 또는 방치행위를 규제

- 토양오염검사 대상에 시설의 경매, 환가 등을 포함(안 제13조)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경매, 환가 및 압류재산 매각 시에도 토양오염검사 대상에 포함, 토양오염에 따른 분쟁 방지
- 벌칙 및 과태료 대상 추가 및 관련규정 보완(안 제42조, 제43조, 제45조)
 - 토양환경평가 부실 작성자, 토양오염 미신고자 등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
 - 토양오염검사결과 미제출,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 미신고자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하되, 과태료처분 이의신청 규정 삭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붙임 2>

법령 개정방향 및 추진 체계도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방향



토양오염관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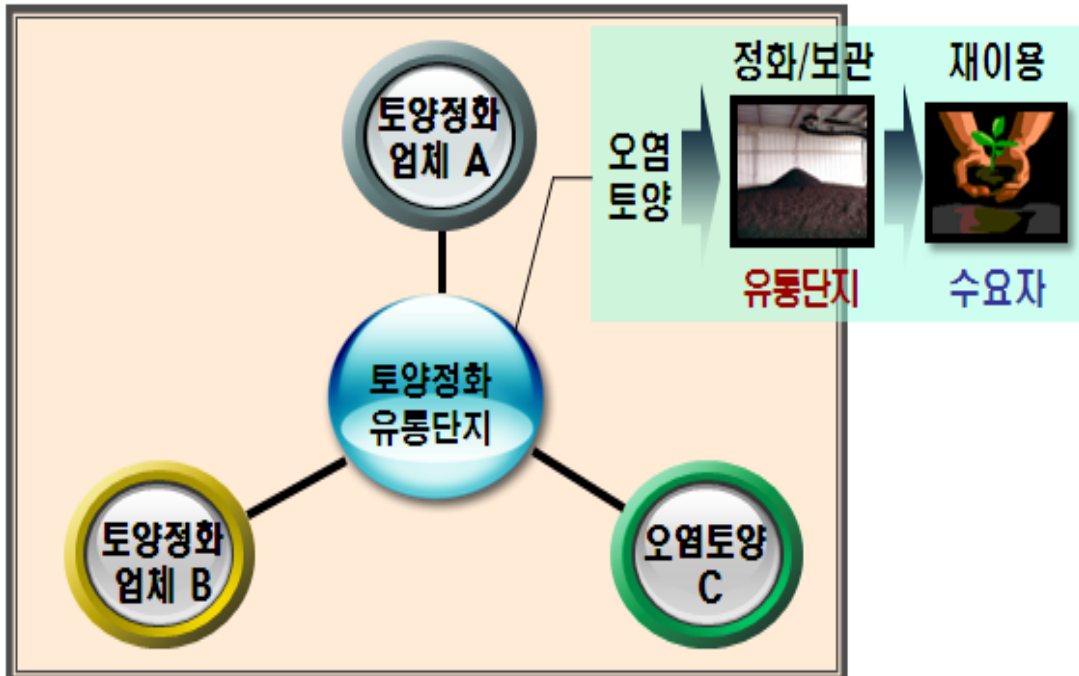
□

오염토양 정화 공제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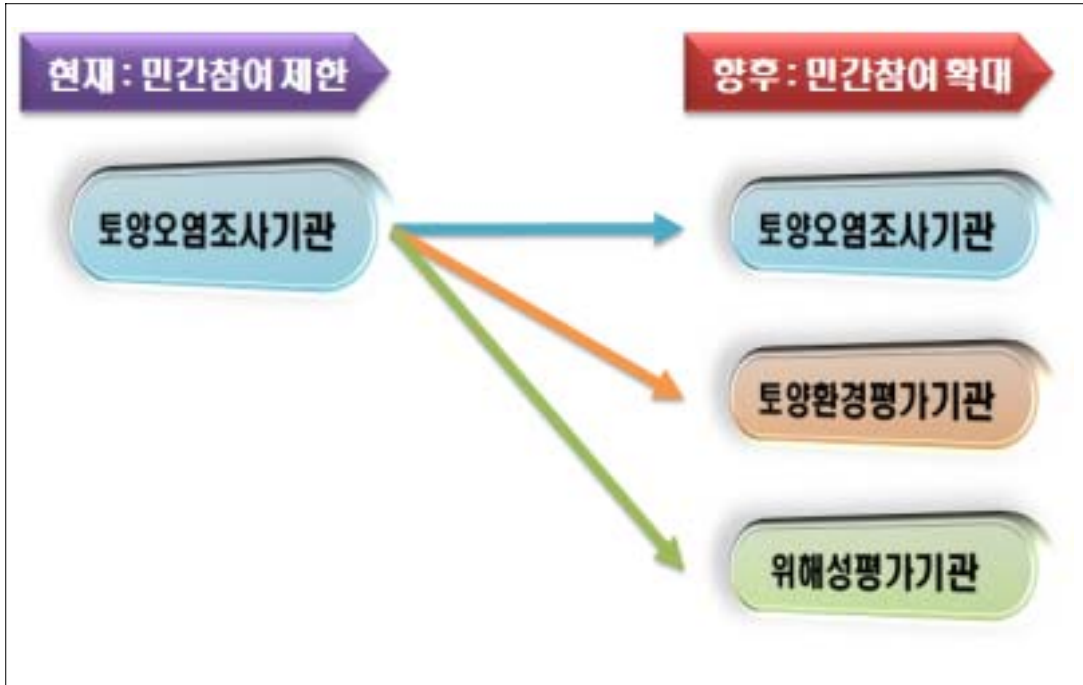
□

토양정화 유통단지



□

토양관련전문기관 민간참여 확대



자료 2 : 2008년 토양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정부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2401
----------	------

제출연월일 : 2008. 11. 28.
제출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 감독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각각 200만원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의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누구든지 대책지역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따른 오수 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토양에 버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7호 중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과태료)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5항에 따른 관계공무원 또는 토양 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
2.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4항 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양정밀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6제2항에 따른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 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린 자
9.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10. 제23조의2제4항 또는 제23조의9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1.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2. 제23조의1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3.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① 행	① 개 정 안
<p>第21條(행위제한) <u>누구든지 對策 地域안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規定에 의한 特定水質有害物質, 廢棄物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有害化學物質, 「하수도법」 제2조제1호 제2호의 規定에 따른 오수 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規定에 따른 가축분뇨를 土壤에 버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생 략)</p> <p>~</p> <p>제3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10. (생 략)</p> <p>11. <u>제19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지도 감독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u></p> <p>12. 16. (생 략)</p> <p>17. <u>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u></p>	<p>第21條(행위제한) <u>누구든지 대책 지역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따른 오수 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토양에 버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p> <p>제30조(벌칙) ---- <u>각 호의 어느 하나</u>-----</p> <p>1. 10.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12. 16. (현행과 같음)</p> <p>17. <u>제26조의2제2항에 따른</u> -----</p>

현행	개정안
<p>第31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종업원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8條 내지 第30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①</p> <p>第32條(過怠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正當한 사유없이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 2.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4항 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양정밀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 	<p>제31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2조(과태료)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正當한 사유 없이 제8조제5항에 따른 관계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 2.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4항 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

현행	개정안
<p><u>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u></p> <p>5. 제13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p> <p>6. 제15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7.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안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린 자</p> <p>8. 제23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p> <p>9. 제23조의2제4항 및 제23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p> <p>10. 제23조의7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p> <p>11. 제23조의14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p> <p>12.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p>	<p><u>양정밀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u></p> <p>4.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5. 제1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p> <p>6. 제15조의6제2항에 따른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7.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8.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린 자</p> <p>9.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p> <p>10. 제23조의2제4항 또는 제23조의9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p> <p>11.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p> <p>12. 제23조의1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p> <p>13.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p>

현행	개정안
<p>② 출한 자</p> <p>③ 삭 제 ③ <u>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u> · <u>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u> ④ <u>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賦課 徵收한다.</u> <u>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u> <u>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u> ⑥ <u>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u> <u>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の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u></p>	<p><u>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u> <u>제1항·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u></p>

자문회의 회의록

자문회의의 목적

- 대표적인 환경법률의 결정
- 연구방법의 확정
- 공동연구자 추천 및 확정
- 연구진행계획 논의

○

○

연구계획에 대한 보고

자문회의

· 자문위원 A

- 경제적 분석이 가능한 분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선 논의를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대상법률의 선정에 있어서는 경제학 분석을 담당하게 될 분의 의견이 중요

- 환경가치 - '환경의 자원성' 즉 성격에 따라서 경제적 환산 방식이 다양함

환경성격에 따라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다

환경자산의 유형화를 통하여 자산별 방법을 적용

법률에 대한 평가 형식을 가지는 것은 Risk가 있다.

: 법원의 판단, 산정 사례를 Review 하고 방법론을 결정하고
비교분석 한 후 차년도에 법률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 적절하다고 생각됨
- 하나의 법에 다양한 영역의 환경분쟁 성격이 다른 것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 경제적 환산의 실질화를 통해서 다른 입법에 대해서도 적용가능하게 된다
- 분석 tool을 찾아내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거나 안되는 경우 유형별로라도 정리필요
- : 이를 통하여 입법평가의 정예화가 가능할 듯함.

자문위원 B

- 전제가 “tool은 3년간 연구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의의를 제시해야 계속 진행사업으로서의 의미가 있음
- 유형별 tool을 찾는 것은 3년 사업에 대한 비난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음
- 표준비용모델, 조건부가치평가법 등을 활용해서 평가 결과를 내놓는 것이 평가의 일부분야, 기존 평가와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됨
- 법률적 분석과 경제적 분석이 동시에 필요하다

자문위원 C

- 적용할 tool을 역으로 사용해서 보는 것으로 발상을 전환해보는 것도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임
환경오염산정을 통하여 기회비용을 평가하는 조건부가치평가법, 개발과 이익의 효율성을 판단해보는 방법 등을 통하여 차

별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자문위원 D**

- 연구수행을 위하여 공동연구진이 모두 모여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됨

▪ 전체 공동연구진이 모두 모여야 연구진행의 방향 등이 결정될 수 있는데 아직 공동연구진이 모두 결정되지 않아서 논의의 의의가 퇴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자문위원 E**

- 분석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계량분석이 가능하려면 좀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자문위원 F**

- 일반모델을 만드는 것은 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기법을 매체별로 정립하자는 의견과 하나의 범주를 정해서 특화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설계를 튼튼하게 해서 출발해야 한다.

: 대기 수질 습지 생태 소음 진동 토지 등 분야별로 정리하되 이 중에서 하나를 정해서 하자

큰 그림을 그리자 : 환경은 시범사업의 성격을 가지는 중요한 과제이다.

: 센터 차원의 고민이 더 필요하다

- 토양환경보전법의 경제가치 환산 : 비시장가치에 부적합한 것이 아닌가
- 쟁점부분을 찾아야 할 것이다.